

농업계 동향

농업경영체 등록 전면 시행

- 6월부터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제가 본격 시행된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이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본격시행에 앞서 지난 해 하반기 전국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자율등록방식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은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한다.
 - 2010년부터는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해 현지실사를 중심으로 등록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 등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며,
 - 주민등록지(농업인), 주사무소 소재지(농업법인)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등록을 담당한다.
-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 아울러 정보가 통합·관리되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특히, 등록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25일 행정안전부에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를 요청하였고, 6월 26일 관보 게재가 이루어졌다. 이번 수입위생조건은 지난 5월 29일 확정된 수입위생조건에 추가협상 내용을 고시 부칙에 반영하는 형태로 수정되었다. 이번 협의를 통해서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의 도입·운영, 우리나라의 검역 권한 강화, 4개 부위의 수입 제한 등에 합의하였다. 한국 QSA는 미국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체 기준을 수립한 뒤 미국 농무부 농산물유통관리국 및 식품안전검사국의 점검을 받는 형식의 제도로, 수출위생증명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우리나라로의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경과조치의 성격을 지닌다.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는 한국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체가 주문하지 않는 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극소한 머리뼈 조각이나 미량의 척수 잔여조직은 반송 조치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검역 권한 강화와 관련하여 위생조건 제24조 중 중단조치의 주체 및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제8조의 도축장 현지 점검 권한 강화와 관련하여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현지점검에서 위생조건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는 기술협의회, 고위급 협의를 갖도록 하였다.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조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작업장에서 수입되는 다섯 번의 선적분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2회 이상 위반가 발견되면 미국 정부에 중단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산지 표시 관리제도 강화 대책 발표

6월 13일 공포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법률이 7월 초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그리고 6월 22일 식품 위생법 개정안 시행령 및 규칙이 실행에 들어간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6월 22일부터 100m² 이상 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원산지 표시제도가 7월 초부터는 모든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까지 확대된다.

원산지 표시제도의 적용 대상도 기존의 구이용 쇠고기에서 탕용·찜용·튀김용·육회용 쇠고기와 밥류까지 확대되었고, 12월 22일부터는 배추김치, 떡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제도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하였고 쌀, 배추김치, 축산물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추가 표시 기준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 단속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단속 투입 인력 확대, 명예감시원 위촉 등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원산지 표시 관리제도 시행에 대해서 향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 홍보부족 등으로 음식점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원산지 표기 방법이 복잡하여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메뉴 교체 등 유지·관리 비용이 소규모 업체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을 확인하기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자재 가격 인상 추세 지속

최근 원유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화학비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요소, 유안, 복합비료 가격은 2003~2007년 동안 평균 10~16.8% 상승하였으나, 2008년 5월말까지 주요 화학비료 가격은 전년 대비 26.4~31.5%나 상승하였다. 2008년 가격을 2002

년과 비교하면 89.6~134.0% 상승하였다. 농협중앙회는 6월 19일부터 화학비료 값을 평균 62.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농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 320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 말까지 추가 상승분의 30%를 정부가 보조지원하고 농협이 30%, 업계가 10% 부담하기로 하였다.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등 40개 기종에 사용하는 7개(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중유, 윤활유, LPG) 유류에 적용되고 있는 면세유도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농가전체 면세유 사용량의 80%를 차지하는 경유 가격의 빠른 인상으로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경유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오르면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50%를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농어민은 경유가격이 1ℓ 당 1,800원을 넘을 경우 최대 183원을 한도로, 추가상승분의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유가와 국제곡물 가격 양등은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축산농가의 채산성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5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축산물 생산비'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축산 농가소득은 양돈 41.7%, 한우 암소 28.3%, 한우 수소(비육우) 6.8%의 순으로 감소하였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년 미국농업법과 농업 보조금 정책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곡물 수출국인 미국이 자국 농가의 소득 안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2008년 농업법」을 최종 확정하였다.

2008년 농업법은 「2008 식품, 보전, 에너지법」이라는 명칭으로 2012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농가 소득 안전망의 확대, 국민 영양 건강에 대한 지원 강화, 환경보존정책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 54페이지에서 연결